성주군 장수축하금 지급 조례안

의 안 번 호	

발의년월일 : 2012년 5월 일
발 의 자 : 김영래 의원 외 3인

1. 제정이유

최근 평균 수명의 증가와 출산율 저하 등으로 인구의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어 노인문제가 시급한 국가 과제로 대두되고 있는 현실에서 선비와 양반의 고장인 우리 군의 전통을 되살리고 사라져 가는 경로효친 사상을 고취하기 위해 장수축하금을 지급하여 노인을 존경하고 배려하는 사회적 풍토를 조성하며, 노후생활의 안녕과 장수를 기원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장수노인, 장수축하금에 대한 용어를 정의함(안 제2조)
나. 장수축하금의 지급대상자를 규정함(안 제3조)
다. 장수축하금 지급액, 지급원칙, 지급신청 및 방법, 제급제외, 환수조치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4조 ~ 안 제9조)
라. 지급대상자 관리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10조)

3. 참고사항

가. 관련근거 :「노인복지법」 제4조
나. 예산조치 : 관련 부서와 합의 예산반영
다. 조례안예고 : 의견 없음

성주군 조례 제 호

성주군 장수축하금 지급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제4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성주군에 거주하는 장수노인에게 장수축하금을 지급함으로써 노후생활의 안녕과 장수를 기원하고 경로효친의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장수노인”이라 함은 주민등록법상 만 99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2. “장수축하금”이라 함은 이 조례에 의하여 지급하는 사회보장적 금전을 말한다.

제3조(지급대상) 장수축하금의 지급대상자는 지급기준일 현재 성주군 관내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장수노인으로 한다.

제4조(지급액) ① 장수축하금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1회에 한하여 지급하며, 지급액은 100만원으로 한다.

제5조(지급원칙) ① 장수축하금의 지급기준일은 주민등록상 만 99세가 되는 날로 한다.

② 장수축하금은 신청에 의하여 지급하되, 신청은 지급기준일 2개월이 남은 때부터 신청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성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인정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지급기준일이 속하는 연말까지 신청할 수 있다.

제6조(지급신청 및 방법) ① 장수축하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관할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읍·면장은 신청서를 받아 지급대상자의 수급자격 여부를 확인하여 대상자 명부를 작성하고,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장수축하금은 본인, 배우자, 부양의무자 또는 위임 받은 자(위임장 소지자 : 〔별지 제2호〕 서식)의 신청에 의하여 지급한다.

제7조(지급) 군수는 제6조 제2항에 의거 장수축하금 지급대상자 명부를 접수한 경우, 접수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개인별 금융계좌를 통하여 지급한다. 다만, 개인계좌로 입금이 불가하거나 입금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를 얻어 지정한 계좌로 입금할 수 있다.

제8조(지급제외)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1. 지급대상자가 지급기준일 현재 주민등록 말소 또는 관외로 전출한 때
2. 지급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한 때

제9조(환수조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축하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지급대상이 아닌 자에게 지급된 것이 확인 되었을 때
2. 그 밖에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지급된 사실이 발견 되었을 때

제10조(지급대상자 관리) 군수는 장수축하금 지급대상자로 결정된 자에 대하여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관리대장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제5조의 지급원칙을 적용함에 있어, 이 조례 시행 첫해에 한하여 주민등록상 만 99세 이상은 만 99세로 보고 제4조에 규정된 금액의 장수축하금을 지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장수 축하금 지급 신청서(제6조 관련)

①지급 대상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 :)				
②가족상황	본인관의 관 계	성 명	주민등록번호		동거여부	직 업
③지급계좌	예금주		은행명		계좌번호	

「성주군 장수축하금 지급 조례」제6조에 의하여 위와 같이 장수축하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지급대상자와의 관계:)

성주군수 귀하

[별지 제2호 서식]

장수 축하금 지급 신청 위임장(제6조 관련)

위 임 받은자	성 명 (한 자)	(　　)	주민등록번호	
	주 소		관계	
	위임사유			

본인은 장수축하금 지급 신청을 위 사람에게 위임합니다.

년　　월　　일

위임자　주　　소 :

성　　명 :　　(인)

주민등록번호 :

성주군수 귀하

[별지 제3호 서식]

장수축하금 지급 대상자 관리대장(제10조 관련)

일련번호	지급대상자				신청일자	지급일자	지급계좌번호		비고 (연락처)
	성명	주민 등록번호	연령	주소			예금주	계좌번호	